Hannam THE HILL 한남더힐

한남더힐 임대아파트 임차인 모집공고

(구)단국대 부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 용산구청 건축과(12890)로 임차인 모집공고 승인
▣ 시행자 : 한스자람㈜ (서울-주택2007-0216)
▣ 시공자 : 금호산업㈜ (전라남도-주택2006-004)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
▣ 감리자 및 감리금액

(VAT 별도)

건 축	전 기	소 방	정보통신
주식회사 한림종합건축사사무소 [₩5,125,739,150]	㈜신화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338,206,165]	주식회사 새서울엔지니어링 [₩36,800,000]	㈜신화에프이씨 [₩112,000,000]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60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아파트 3~12층 32개동 600세대 중 금회공급분 133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면적단위 : ㎡)

구 분	주택형(㎡)	주택 타입	세대수	세대별 공급면적			기 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서비스면적	대지지분
				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소 계					
민간건설 임대주택	59	59A	102	59.686	27.367	87.053	4.465	32.310	123.828	27.256	58.369
		59B	31	59.700	27.738	87.438	4.466	32.317	124.221	32.870	58.373

▣ 공급금액

(단위 : 천원)

주택형(㎡)	주택 타입	층 별	세대수	임대보증금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입주시)	월임대료
					1차(10%)	2차(10%)	1회(20%)	2회(10%)	3회(10%)		
					(계약시)	(계약 후1개월)	(2010.03.22)	(2010.06.21)	(2010.09.20)		
59	59A	1층	11	496,200	49,620	49,620	99,240	49,620	49,620	198,480	620
		2층	12	505,200	50,520	50,520	101,040	50,520	50,520	202,080	631
		3층	12	514,100	51,410	51,410	102,820	51,410	51,410	205,640	642
		4-10층	67	538,300	53,830	53,830	107,660	53,830	53,830	215,320	673
	59B	1층	4	498,400	49,840	49,840	99,680	49,840	49,840	199,360	623
		2층	4	507,400	50,740	50,740	101,480	50,740	50,740	202,960	634
		3층	4	516,400	51,640	51,640	103,280	51,640	51,640	206,560	645
		4-10층	19	540,700	54,070	54,070	108,140	54,070	54,070	216,280	676

※ 상기 주택형 및 타입은 세대전용면적 기준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주택형 59 → 구 87 / 타입 59A → 87A / 타입 59B → 87B)
※ 2009년 4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한 주택형 표기방식에 따라, 기존 공급면적(세대전용면적+세대공용면적)에서 세대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하여 표기함.
• 당 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지 않고 사업시행자의 재정으로 건설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임.
• 상기 공급조건은 당사에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세대당 계약면적에는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의 기타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전체사업부지에서 기부채납부지(도로, 공원 등)면적을 제외하고, 주거면면적과 비주거면면적 비율에 의한 주거부 대지 비율 면적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확정측량결과에 따라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59A 및 59B Type은 분리 신청을 받지 않으며, 전산(컴퓨터) 추첨에 의거 무작위로 동 · 호수가 결정됨.
• 공급대상의 주택타입은 주택형별 평면유형에 따른 구분으로 세부사항은 분양사무소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는 제외)의 50%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 받을 수 있다. (이때,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가 확인한 건축공정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 검사 일을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나머지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 검사일을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함.

▣ 임대기간 및 계약조건

• 임대기간 : 5년
• 임대조건의 변경
  – 계약체결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의 산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 차임 등 증액청구에 기준 등」에 의거, 최초입주세대 입주지정 기간을 기준으로 매년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됨.
• 분양전환 조건
  – 분양전환 시기 :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경과 후 가능함. (단. 임대주택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임대의무기간의 1/2 경과 후 임차인과 협의하여 분양전환 가능함)
  –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금액 산정기준 : 분양전환시 분양전환금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함.
  – 분양전환금액 산정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기 선정하는 감정평가법인은 평가기준 전년도 매출액 상위 10위권이내 평가법인 중 선정한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 할지라도 당첨을 취소하고 고발 조치함.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에 준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전환시 당해 주택에 대한 수선. 보수의 범위는 외부도장에 한 함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 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등을 방문하여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자격

자 격 요 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분[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 – 1인당 1회만 신청가능(동일인이 2회 이상 중복 신청하는 경우 청약신청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거주지역 및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청약신청 가능함. – 공급신청은 주택형에 따라 접수하고 평면유형은 청약자가 신청한 주택형별 내의 평면유형 중에서 무작위로 추첨 · 결정함. – 용산구청 분양승인(용산구청 건축과 2122)에 의해 기 공급된 한남더힐(467세대) 아파트에 당첨 또는 계약자는 청약할 수 없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구청 분양승인(용산구청 건축과 2122)에 의해 기 공급된 한남더힐(467세대) 아파트에 당첨 또는 계약자가 신청하여 당첨되더라도, 당첨자격을 상실하고 계약체결을 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신청시 (배우자 포함)	1. 주택공급신청서 (양식은 하나은행 비치) 2. 본인 또는 배우자 인장 (서명도 가능) 3. 본인확인증표 : 주민등록증 (본인 또는 배우자),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배우자 대리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 추가제출 : 주민등록등본 등 (배우자 관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4. 청약신청금
제3자 대리청약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아파트신청위임용),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양식은 신청접수 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확인증표는 제출 생략 가능

▣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

청약 접수일자	청약 접수장소	당첨자발표 일자	당첨자발표 장소
2009. 8. 17(월) ~ 2009. 8. 18(화) 09:00 ~ 16:00	하나은행 본/지점 및 인터넷뱅킹 접수 (접수시간 : 09:00 ~ 16:00 / 인터넷뱅킹은 18:00까지 접수) (www.hanabank.com)	2009년 8월 21일(금) 오후 2:00	문화일보 2009년 8월 21일(금)

※ 청약접수 마감일인 8월 18일(화)은 은행창구가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가급적 그 이전에 청약신청금을 인출하시고 청약접수 또한 그 이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음.(전화문의는 대화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하나은행 인터넷청약 안내

※ 청약신청예정자께서는 청약이전에 하나은행지점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융거래법 개정(2008. 4. 1)으로 인한 1회이체한도 제한으로 인해 인터넷뱅킹 기 가입자께서는 1일(1회) 이체한도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구 비 사 항
이용대상	공 통	• 뱅킹계좌에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단, 하나은행 통장거래고객에 한함)
	인 터 넷	• 하나은행에서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방법 및 절차	인 터 넷	• 하나은행 홈페이지(www.hanabank.com) → 인터넷뱅킹로그인 → 개인뱅킹 → 이체 → 인터넷청약 → 오피스텔/기타부동산 인터넷청약신청
이용시간		• 09:00 ~ 18:00(청약접수 완료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에 문의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및 추첨방법

• 금융결제원 컴퓨터 추첨에 의해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 · 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청약금

청 약 금	비 고
3,000만원	수도권 소재 시중은행 자기앞 수표1매(창구 신청자에 한함)

※ 은행창구 접수시 현금 및 수표로만 입금 가능하며 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및 pc뱅킹 등은 모두 불가능합니다.
※ 현장 및 분양사무실에서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안내

기 간	장 소	임대보증금 납부 계좌안내
2009. 8. 26.(수) ~ 2009. 8. 28.(금) 10:00~16:00	한남 더힐 분양사무실 내	하나은행 (247-910005-68704) 한스자람㈜

• 계약금은 임대보증금 납부계좌로 무통장입금 또는 현장(분양사무실)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시 동 · 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함.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계약체결 이후라고 할지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 체결된 공급계약은 취소됨.

▣ 계약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계약체결시	– 주택공급신청서 (고객용)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아파트 계약용) 및 인감도장 – 계약금(가능한 한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 바람) – 본인 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 •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등본 1통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사항	– 본인 이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배우자, 직계존 · 비속 포함)하며, 상기 본인 계약 체결시 구비사항 이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계약장소에 양식 비치)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계약일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 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시 외국인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 입주자 융자지원사항

– 대출관련 세부사항은 당첨자에게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융자 가능 여부와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 및 금융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각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 대출불가 및 대출금액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한 책임을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 대출 이용시 발생하는 인지대, 보증수수료 등 대출취급과 관련된 제반비용은 대출 신청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함.

▣ 청약 신청금 환불

– 환불기간 :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 이후(2009. 8. 24.이후) 단,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 청약자(당첨자 및 낙첨자 모두 해당)의 신청금은 모두 환불되며,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므로 당첨자는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 체결하여야 함.
– 청약신청금은 청약접수시 신고한 청약자 본인명의의 지정계좌(하나은행 및 타 은행 계좌가능) 또는 인터넷 출금계좌로 자동이체 됨.
– 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치 않음.

▣ 입주예정일 : 2011년 1월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할 예정임.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은 실 입주 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 약 1개월 전에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정확한 사전점검일은 추후 별도 통보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휘트니스센터, 골프연습장, 수영장, 주민공동시설 등

▣ 유의사항

•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에는 당첨무효, 해약 및 퇴거 조치됨.
• 준공 후 불법구조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준공 이후 발코니 구조변경을 할 경우 개별세대로 행위신고(허가)절차를 득하여야 하고, 사전허가 없이 불법구조 변경하여 확장하는 행위는 건축법, 주택법을 위반하는 사항으로 입주 후 관계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구조 변경 시 엄중한 처벌과 원상복구 등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으로 선정된 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신청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공급신청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으며,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평형 환산방법=형별면적(㎡) ÷ 3.3058)
• 세대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아파트 연면적 대비 계약면적(공급면적) 및 평형별 대지지분의 합계에 따른 면적오차는 절삭함.
• 주거공유면적은 주동 형태별 · 평형별로 구분 배분되었음.
• 부지 동측, 남측에 건축한계선이 존재하며 이 부분은 공공의 이용이 가능한 인도로 계획되어있음.
• 사업부지내에 대지면적에는 포함되어 있으나 변형이 불가능한 원형지보존구간이 존재함.
• 사업부지내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이에 대해 임차인은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내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며, 수직동선 해결을 위해 옥외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외부인도 사용할 수 있음.
• 옥외공간 디자인은 각 동별로 다른 테마를 가지고 조성되어, 설치되는 조경시설 및 외부시설물의 종류 및 위치에 차이가 있으며, 벽천 등 일부 시설물의 설치에 따라 조경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130, 118동 남측에 어린이놀이터 설치됨.
• 경사가 심한 단지 내 수직 동선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3, 104, 107, 111, 114동 측면 및 부대복리시설 진입광장에 옥외 엘리베이터가 설치됨.
• 101동 남서측은 상가와 인접함.
• 102, 104, 107, 111, 114, 117, 118, 126, 128, 121, 130, 131동 전면,측면 혹은 배면에 지하주차장 진입램프가 설치됨.
• 101, 102, 103, 104, 105, 106, 108, 110, 112, 113, 114, 116, 119, 120, 121, 122, 123, 126, 127, 129, 130, 132, 전면, 측면 혹은 배면에 드라이에리어가 설치됨.
• 각동 주출입구는 대지상황에 따라 진입방식(1층 진입, 필로티 진입, 지하층 진입, 지하주차장 램프 인접출입구)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평면구조 및 면적에 차이 있음.
• 102, 114, 117, 119동에 편코어로 계획된 Line이 있으며 이로 인해 세대전면 코아평면구조 및 면적에 차이 있음.
• 120~129동 코어는 비대칭형 평면이며, 122, 123, 125, 127, 129동 상부 층은 편코어로 계획 되어 있음.
• 101, 105, 108, 109, 112, 113동은 상층으로 올라가면서 Set back되는 테라스형 주동으로 층별로 코아면적에 차이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동별로 1개소가 계획되어, 코아별로 설치유무에 차이가 있으며 주출입구 상황에 따라 옥외 또는 옥내설치 됨.
• 102, 115, 116, 118, 121, 124, 126, 131동 하부 지하출입구 측 및 103~113동 옥외에 관리차원 으로 쓰레기분리수거시설 및 재활용품 보관소가 설치됨.
• 284TOa1~5, 281TOb형 침실 1, 2, 3 은 같은 평면형에서도 동별, 층별로 발코니 창문크기에 차이 있음.
• 302TEa, 303TEb, 302TEc, 268TEd 단위세대는 테라스형으로 후면은 채광이 불가하고, 전면에 테라스가 설치되는 평면으로 접지 층 세대는 상부층보다 테라스 깊이가 약 1.5m추가 확보됨.
• 테라스하우스(스톤형) 주동의 T101, T102, T103, T201, T202, T203은 지하층으로 등기 됩니다.
• 일부동(105, 108, 112, 116, 118, 130, 132)PIT층에 제연팬 설치로 1층 세대에 진동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30, 132동 1층 하부에 제연설비용 급기구 설치됨.
• 131동과 132동 사이 하부에 정화조시설 계획 및 132동 2호 3호 사이에 정화조 환기덕트가 설치되며 지붕 슬라브 바닥으로부터 105CM 높이에 환풍기가 설치됨.
• 121동 상부에 TV 안테나 설치됨.
• 102동, 114~119동은 동조합방식에 따라 같은 평형에서도 서비스면적에 차이가 있음.
• 120, 121동 측면에 열병합 발전시설용 연도 및 실외기 설치됨.
• 각 평형 1층세대는 창호위치 및 크기에 있어 나머지층과 차이가 있음.
• 각동 지하주차장 출입구 컨디션에 차이가 있음.
• 115, 116동 전면 6M 도로측에 비상차량동선 진출입구(탈착형 볼라드 설치)가 있음.
• 아파트 입주자의 하자보수 관련 일체의 입주자 피해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아파트는 형별, 층별, 향별로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사전숙지 하시길 바라며, 사전숙지 미흡으로 계약 및 입주 후 제기하는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도 당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음.
• 부대복리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제공집기 및 마감재도 변동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1조 제4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는 경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 홍보카다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시설(학교, 지하철, 도로, 공공용지 등)은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 시공 중 천재지변, 문화재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아파트는 발코니 확장형을 기본으로 설계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설계변경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새시의 위치, 크기 및 사양은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부위에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새시 유리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지 주변 건축물의 신축 및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조망, 일조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일부세대는 공사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현장여건 주변개발 등 사업부지 및 주변현황의 확인에 대한 책임은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 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추가연결사용은 불가하며 그에 따른 성능저하 및 문제발생에 대한 책임은 수급자가 해결하여야 함.
• 아파트 외부색채 및 경관조명 등 외부입면계획은 추후 관계기관과의 협의결과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관계법령에 위반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시 임대주택에 대해 분양전환 이전까지 제한물권설정이나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등기 신청 예정임.
• 임대주택법에 의거 입주 후 임차인의 부담으로 임대보증금의 보증 가입 등으로 임대보증금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일정한 보호를 받게 됨.
•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연될 수 있음.
• 단지 내 상가는 별도의 분양시설이나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음.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또는 품질향상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이상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한 후 분양전환 하는 경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분양전환함.
• 분양전환에 따른 개별 소유권 이전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법 제4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주택 내부의 구조물과 설비를 증설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는 불가함.
• 마감자재의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제반 홍보물의 면적 및 세부내용은 인 · 허가 및 인쇄과정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명칭 및 동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시 본 공고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니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조경 및 세부 식재계획, 어린이 놀이터 기구는 변경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신청자격, 임차인 선정방법 및 모집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임대주택법등 관련 법규에 따름.
•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사전숙지 바라며, 사전숙지 미흡으로 계약 및 입주 후 제기하는 어떠한 민원에 대해서도 당사에서 책임지지 않음.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 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분양사무소 및 공급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람.

▣ 한남 더 힐은 대한주택보증(주)의 주택임대보증을 받은 주택임

보증서 번호	보 증 금 액	보 증 기 간
01292009-102-0000300	사백사십일억칠천사백오십팔만원정 (₩ 44,174,58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 일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포함)

▣ 사업주체가 부도, 파산하였을 경우 승계시공사는 대한주택보증(주)임.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 중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 채무자가 보증사고로 임대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임대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임대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 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 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임대보증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 · 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임대보증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임대보증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임대보증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임대보증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
7. 보증채권자가 주택임대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임대보증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임대보증금에 대한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임대보증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임대보증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임대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 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임대보증금
12. 주 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품목(예시 : 홈오토, 발코니 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②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임대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임대보증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임대보증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중 전체임대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 인터넷 홈페이지 : www.hannamthehill.co.kr
▣ 분양사무실 위치 :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8-3
▣ 분 양 문 의 : 02) 525 - 9295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또는 분양사무소로 확인바랍니다.

▣ 기타사항
• 청약신청 시 허위서류 제출, 미자격자, 중복신청자 등으로 판명될 경우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제증명서류는 공급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계약용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계약용)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기간에는 소매치기 등 분실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개관은 당첨자 발표일 이후 가능하며 당첨세대에 한하여 개관합니다.

문 의

02) 525-9295

www.hannamthehill.co.kr / www.한남더힐.kr

시행 한스자람(주) 시공 금호건설